



강남규 대표변호사 / CFA

Email. nkkang@gaonlaw.com

Tel. 02-3446-5419

Fax. 02-3446-5700

강남규 변호사는 2005년 법무법인(유) 율촌 조세그룹에서 Professional 생활을 시작하여 파트너로 근무하다가 2017년 법무법인 가온을 설립하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17년에 걸친 업무경력을 통해 다수의 조세쟁송에 관여하면서 조세분쟁 해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예규질의 · 세무조사 · Tax Planning 등 각종 조세자문에 있어서도 폭넓은 업무실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 변호사는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업계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여러 공적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국제 세무 문제에 관해서도 흔치 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CFA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
온
佳
豊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세법, 2022)
미국 Northwestern Kellogg LL.M. (우등 졸업,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행정법, 2004)
사법연수원 수료 (제31기, 2002)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최우등 졸업, 1999)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경력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2017~현재)
법무법인(유) 세한 조세그룹 파트너변호사 (2015~2016)
법무법인(유) 현 파트너변호사 (2011~2014)
법무법인(유) 유품 파트너변호사, 소속변호사 (2005~2011)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2022~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8~2020)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8~2020)
국세청 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2019~2020)
국세청 본청 고문변호사 (2015~2018)
국세청 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2013~2015)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2013~2014, 2019~202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2019~2021)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6)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2~2014)
국세공무원교육원 송무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위원 (2012~현재)
관세청 본청 고문변호사 (2013~2021)
관세청 본청 관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7~2019)
서울본부세관 고문변호사 (2018~2020)
서울본부세관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2015~202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8~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문변호사 (2020~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상각위원회 위원 (2018~2022)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투자심의위원회 전문직 위원 (2018~2020)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2018~2019)
한국세법학회 법제이사 (2022~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이사 (2016~현재)
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 (2016~현재)
한국조세연구포럼 감사 (2021~현재)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2021~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2014~2018)
금융위원회 자본이득세 과세 TF 전문위원 (2012)
한국 CFA협회 부회장, Advocacy Committee 의장 (2010~2015)
한국 FPSB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위원 (2006~2016)

업무분야

조세자문 / 쟁송, 세무조사 대응, 국제조세, 관세, 지방세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수상/선정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016)
관세청장 표창 (2016)
조세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리걸타임즈 (2019~2021)

논문 / 저서

2017 소득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8)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의 법적 한계, 조세법연구 (2015)
비거주자인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와 입증책임, 조세법연구 (2014)
2013 국제조세 판례회고, 조세학술논집 (2014)
20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01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과 후속처리, 계간 세무사 (2007)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07)